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2021년도 제2회 추경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타수입 및 예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 계(7건)	7,117,526	6,907,526	2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51,451	1,051,451	0
체육진흥기금	1,506,155	1,506,155	0
식품진흥기금	149,905	149,905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240	60,240	0
재난관리기금	2,440,375	2,440,375	0
옥외광고발전기금	120,339	120,339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89,061	1,579,061	210,000

Ⅲ. 기금변경 개요

□ 기금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1년도말 기금조성계획액은 7,117백만원 임.

[단위:천원]

기 금 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 계(7건)	7,117,526	6,907,526	2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51,451	1,051,451	0
체육진흥기금	1,506,155	1,506,155	0
식품진흥기금	149,905	149,905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240	60,240	0
재난관리기금	2,440,375	2,440,375	0
옥외광고발전기금	120,339	120,339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89,061	1,579,061	210,000

Ⅳ. 검토결과

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총괄)

- 수입·지출계획은 7,11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은 기정액 대비 기타수입 21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출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예치금 21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기금운용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획액		기 정 계획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17,526	100.00%	6,907,526	100.00%	210,000	3.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51,451	14.77%	1,051,451	15.22%	0	0.00%
체육진흥기금	1,506,155	21.16%	1,506,155	21.80%	0	0.00%
식품진흥기금	149,905	2.11%	149,905	2.17%	0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240	0.85%	60,240	0.88%	0	0.00%
재난관리기금	2,440,375	34.28%	2,440,375	35.33%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20,339	1.69%	120,339	1.74%	0	0.0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89,061	25.14%	1,579,061	22.86%	210,000	13.30%

나. 기금별 변경내역

□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유통산업과)

○ 수입·지출계획

- ▶ 수입은 기정액 대비 계통출하조직(농협) 출연금으로 210백만원 증액되었으며
- ▶ 지출은 예치금으로 21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789,061	1,579,061	210,000	합 계	1,789,061	1,579,061	210,000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용자성 사업비	900,000	900,000	0
예치금 회수	1,073,622	1,073,622	0	예치금	889,061	679,061	210,000
이자수입	5,439	5,439					
기타수입	210,000	0	210,000				

다. 검토의견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계통출하”란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하며,
- 같은조례 제6조 2항에 기금의 재원으로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군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기금을 확대조성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 2021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